▌이베로아메리카 제10권 1호(2008.06.30) : 125 161

콜롬비아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김 영 철**
Kim, Young-Chul

<Abstract>

Multiculturalism and Afrocolombian Human Rights in Colombia

This article is object to analysis afrocolombian human rights under contradictory situations of civil war and consolidations of democracy in Colombia. Afrocolombian is recovering from resistance identity to autonomous identity by new multicultural constitutions and law of Black Communities. New constitutions is a great step forward to protect civil liberties of afrocolombian and Law of Black Communities recognized the right of afrocolombians to collectively own and occupy their ancestral lands. These laws will not be enough to guard afrocolombian human rights because of national situations.

Colombian government approved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laws in order to territorial rights, but administrational process to recognize black community is not function efficiently, qualitically and judicially. Also forced displacement and internal shelter by civil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 과제로 2년 과제 중 2차년도 연구결과임(KRF-2004-072-BM3062). 이 연구 결과는 2008년 5월 2일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의 HK유망연구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하였음.

**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
E-mail: quimcarlos@aum.net

war has infringed on afrocolombian human rights such as destructionsof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communities.Racial discriminationsin colombiaalways finds out in health care system, educational chance, wage gap and recruit.

Government have the courage of one's will that improve afrocolombiansocial conditions throughmulticulturalconstitutions and afrocolombianlaw but it is difficult that change ontological invisibility into ontological value and visibility.

[Key Words: Colombia/ Human Rights/ Afrocolombian/ Multiculturalism/Racial Identity]

[: / / / / /]

Ⅰ. 들어가면서

콜롬비아 정부 발표에 따르면 흑인은 전체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NGO와 흑인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25%에 이른다고 주장한다.[1] 그동안 콜롬비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인구센서스에 인종 구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점, 외국기관의 통계 자료에 의존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인종을 문화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일반론에 비춰볼 때 NGO와 흑인

1) 1990년에 비로소 인구센서스에 인종구분이 포함되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외국기관의 통계조사나 흑인 운동 단체들의 통계를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3년 콜롬비아 통계청은 흑인이 8%라고 발표했지만, 2002년 흑인 발전 플랜에서는 26.0%라고 발표했으며, 바예대학교는 18.6%로 발표했다. 인구센서스에서 인종 구분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 본 연구는 흑인 발전 플랜의 발표 내용을 수용한다.

단체의 통계가 더 설득력을 지닌다. 콜롬비아 역사에 흑인이 등장하는 것은 16세기 식민통치가 본격화되고 아시엔다에 노동력이 필요하면서부터이다. 식민 경제 활동이 카리브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의 광산 개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흑인 노예들도 정착지역을 안데스 산맥 서면으로 확대했다.[2] 이렇게 등장한 흑인은 식민 사회에서는 노예로, 국민국가 형성기에는 드러나지 말아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산업화기간에는 배제된 계층으로서 콜롬비아 사회에 통합되었다. 이러한 역사·구조적 차별적 상황과 더불어 내전으로 흑인의 사회적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내전은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야기시켜 흑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이며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흑인의 인권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그것은 인권이 권력의 유무와 사회·경제적 조건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콜롬비아는 1990년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강화되면서 인권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전이 일상화되어 문화적 인권 침해가 확대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는 국가이다. 인권의 제도화는 1991년 헌법 개혁에서 시작되었다. 신헌법은 히스패닉, 가톨릭과 스페인어로 통일된 문화만을 지닌 국가가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다문화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집단적이고 통일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개방하여 존재론적 가치를 높여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다문화주의의 소수자 문제는 민족 건

2) 현재 흑인 인구의 86.2%가 초코, 카우카, 나리뇨, 볼리바르, 안티오키아, 산안드레스와 프로비덴시아와 같은 태평양 연안 지역에 살고 있다.

설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인종과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박병섭 2008,22).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단일 인종과 통일된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콜롬비아가 다문화주의 헌법을 채택했다는 것은 인디오와 흑인들의 존재감을 되살리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 의도는 흑인법으로 알려진 제70호 법령에 담겨져 있다. 흑인법은 콜롬비아 사회를 형성하는 한 축으로 역할 해 온 흑인의 인종·종족 정체성과 문화공동체를 인정하고 그 땅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문화주의 헌법이 채택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내전으로 무차별적인 인권침해와 유린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민주적 헌법개혁을 통해 흑인의 인권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으며 현실적 측면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콜롬비아 역사에서 노예, 저항과 비가시성으로 이어지는 흑인의 통합과 정체성 회복 과정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흑인이 콜롬비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존재로 인정받고 문화권적 인권을 보장받는 신헌법과 흑인법의 내용을 통해 흑인 인권의 제도화를 가름해 본다. 4장에서는 흑인의 생존권, 사회권과 영토권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제도화와 내전의 확대라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흑인 인권이 어떤 역학관계 속에 있는가를 재평가해 본다.

Ⅱ. 저항적 정체성에서 자율적 정체성으로

1. 식민과 흑인 노예의 저항

콜롬비아 흑인들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513년 스페인 왕정이 뉴그라나다에서 아프리카 흑인 노예 노동력 사용을 허가하면서 카르타헤나 항구를 통해 유입되어 17세기 중반까지 135,000-170,000명 정도가 들어왔다. 이후 노예무역이 금지되고 노예해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예들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당시 뉴그라나다에 유입된 흑인들의 특성들은 아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Sánchez& García 2006, 11 ; Arocha 1998, 74).

표 1) 뉴그라나다의 흑인 노예

구 분	무역업자	종족구분	노동형태	목적지	저항형태
1533-1580 허가제	스페인인 제노바인	월로어프 발란타 브란, 자프	가사노동 금광 채굴	카리브해 안티오키	알려지지 않음
1580-1640 독점계약 (Asiento)	포르투갈인	콩고, 테케 앙골라 브란, 자프	목축 금광 채굴	카리브해 안티오키	무장 도망 노예 공동체 상징적 도망 노예 공동체
1640-1703 독점계약	독일인	아칸,요루바, 판티폰, 이보	농업 금광 채굴	카우카 계곡 태평양 연안	무장 도망 노예 공동체 자가 노예 해방
1704-1713 독점계약	프랑스인 요루바인	에웨, 판티	농업 금광 채굴	카우카 계곡 태평양 연안	무장 도망 노예 공동체 자가 노예 해방
1713-1740 독점계약	영국인	아칸, 에웨, 이보	농업 금광 채굴	카우카 계곡 태평양 연안	자가 노예 해방
1740-1810 밀무역 독점계약 자유무역	영국인 스페인인	아칸, 에웨, 아산티,콩고	광산	태평양 연안	자가 노예 해방
1750-1850 자유 무역	스페인인	크레올	금광 채굴	태평양 연안	자가 노예 해방

참고 자료: Arocha(1998)재인용

흑인 노예는 아시엔다와 광산 지역에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억압적인 제도가 강화되면서 이탈이 증가했다. 이탈한 노예들은 백인 주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립적인 경제활동에 기초한 독립적인 문화공간을 형성하여 오랫동안 저항했다. 또한 식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적 자유를 확보하기도 했다. 식민 사회에서 흑인이 자유로운 사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조건은 자유를 얻는 것이었다. 노예제 사회에서 흑인들이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자유를 사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런 제도 때문에 흑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방법은 콜롬비아 식민경제가 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1차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광산업은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노예에게 주말 중에 하루는 자신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Re$repo2004,703).노예들은 자유 시간을 이용해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해방 노예들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 적응한 초기 식민 사회의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백인과 흑인 문화를 동시에 향유하고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물라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식민기간 리브레(Libre)라고 불리었던 흑인과 물라토들은 사회계층과 계급적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제도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식민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었다. 도망 노예들은 지배 권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시마론(cimarrón)이 집단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팔렌케(Palenque)를 마련했다. 라틴아메리카에는 식민기간 도망 노예들이 만든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브라질에서는 킬롬부(Quilombo), 베네수엘라에서는 쿰베(Cumbe)라고 한다. 이 공동체들은 식민 본국에 의해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아프리카 문화 전통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성장했다.[3] 태평양 연안지역에는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 "엘 카스티고(El Castigo)"라는 팔렌케가 가장 큰 도망노예 집단이었다. 당시에 팔렌케는 식민사회 구조와 유사했는데 마을이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으며, 정치구조도 식민사회의 카빌도(Cabildo)와 같은 조직적 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권력과 권리도 비슷했다. 카리브해의 일부 팔렌케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마-구아그로와 같은 정치구조를 지니고 있기도 했다(차경미 2008, 112-115).

세 번째 방법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었다. 흑인들과 물라토들은 바르바코아스의 투마코(Tumaco)에서 1781년과 1791년 두 번에 걸쳐 모반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마지막 방법은 식민정부에 순종하는 방법이었는데 군대에 편입되어 전과를 올리는 것이었다. 1761년 노비타, 1774년 킵도에서 흑인과 물라토가 인디오 진압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식민 기간 흑인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갈구해 왔으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억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했다. 저항적 정체성은 억압적인 정치 구조,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의 경제 구조, 엄격하게 계층화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팔렌케는 독립된 문화 공간으로서 저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

3) 독자적인 문화 형태는 주로 카리브 해안 지역에서 많이 형성되었다.

2. 근대 국민 국가와 비가시적 존재

흑인은 독립 전쟁에 참전하면서 해방의 기회를 맞았다. 공화사상을 받아들인 시몬 볼리바르는 기본적으로 인종적 평등을 주장했다. 때문에 독립 직후 정치 논쟁에 노예 해방이 거론되었다. 그 결과 안티오키아 정부가 1814년에 태아의 노예 해방법(Libertad de vientres)을 통과시켰으나 10년이 지난 1824년이나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태어난 모든 노예들은 자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 1843년 포파이얀 지방의 칼로타(Calota)에서 노예반란이 발생하여 하피오, 라볼사와 케브라다세카 전역으로 확대되어 아시엔다를 불태우고 농장주들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예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결국 1851년 5월 21일 호세 일라리오 로페스(José Hilario López)정부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Agudelo2005, 38).

흑인들은 법적 자유는 획득했지만 콜롬비아 국민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했다.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들은 차등적으로 적용되거나 박탈당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자유를 얻은 흑인들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농장에 예속되어 있었을 때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렸다.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계절노동자나 방랑자로 전락했지만 이 조차도 흑인과 물라토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 발표되면서 여의치 않았다. 또한 참정권이 경제적 부로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공무원도 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법적 지위는 획득했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차별이 일상화되는 출발점이었다.

이런 구조적 차별은 유럽의 과학주의를 담은 1886년 헌법이 발표되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유럽의 과학주의에 기초한 진화론이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흑인과 인디오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라고 인식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그들을 배제시키려 했다. 그 첫 번째 법안이 흑인과 인디오를 미개인으로 규정한 1890년의 법령 제89호이다. 다음으로는 1905년에 안데스 지역의 인디오 공동 토지 제도인 에히도제를 폐지한 법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인종적으로 개량할 목적으로 유럽인의 이민을 장려하고 유색인종의 이민을 금지시킨 1922년의 법령 제144호 이민법이다(Arocha1998,77).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콜롬비아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정치엘리트들은 콜롬비아의 정체성을 백인과 백인문화로 동질화시켜 유럽 제국과 동등한 발전 단계에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었다. 이런 주장은 콜롬비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비서구적이고 야만적인 문화적 요소를 철저히 무시하는데서 출발했다. 따라서 문화적·인종적 후진성을 나타내는 흑인과 인디오는 콜롬비아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Cunin2003,1).

이런 경향은 인종과 종족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메스티사헤적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졌다. 루이스 로페스 데 메사(LuisLópezdeMesa)는 1934년에 발표한 "De cómo se ha formadala nación colombiana"에서 문화적 혼종을 통해 콜롬비아가 형성되었음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흑인은 게으름, 나태함, 음악성과 감성적인 특성만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라우레아노 고메스(LaureanoGómez)는 "흑인들은 흑사병이다. 흑인이 사라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칠레가 안정적인 정치, 경제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메스티사헤적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흑인의 사회적 기여와 문화적 가치를 소진시키고, 정치·경제적인 배제와 차별과 더불어 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소외시키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했다.

흑인은 식민기간의 노예제를 통해서도 그랬고, 국민국가 형성기에도

피차별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는 사회적 진보와 통일 문화 형성이라는 근대화 논리에 묻혀 인종과 문화 가치들이 콜롬비아 사회 지층으로 감추어져 더욱 높은 비가시성을 띠었다.

3. 흑인의 문화적 저항

일반적으로 흑인 운동은 네그리튜드 즉 아프리카성 혹은 아프리카 정신으로 정의되는 인종·문화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 네그리튜드는 정치운동과 문화운동으로 구분되는데, 정치운동은 세자르가 주장한 것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과 탈식민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단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운동은 아프리카인들의 감성, 직관, 창조성을 통해 아프리카성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이런 구분은 개별 국가들의 흑인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운동방향에 따라 나누어진다. 제도적으로 인종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미국과 남아공의 경우에는 민권운동을 강조하면서 흑인들의 정치력을 결집시키는 인종 정치의 성격이 강하지만, 콜롬비아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인종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화 정치에 가깝다. 이런 측면에서 콜롬비아의 흑인운동은 문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콜롬비아에서 네그리튜드는 어떻게 수용되었을까?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네그리튜드는 니콜라스 기옌, 윌프레도 람,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의 작품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아프리카적 요소의 미학적 표현과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자의식을 일깨우는 개념으로 수용되었다(Cordoba and Obregon, 1992). 콜롬비아에서는 1943년에 세자르와 셍고르를 추종하는 보고타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흑인의 날(Dia del Negro)'를

재정하여 흑인연구를 시작했고 '인종주의자와 분리주의자(Racistas y Separatistas)'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했다.[4] 1970년대에는 60년대 미국과 남아공의 흑인운동에 영향력을 받은 정치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시민적 권리의 평등성을 주장하는 민권운동으로 발전했다.[5] 또한 1977년 칼리에서 개최된 "아메리카 흑인 문화회의"에서 백인 문화 속에서 흑인문화가 지니는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논의들이 확대되면서 흑인의 자긍심을 함양하는 문화운동이 확대되었다. 이 회의에서 흑인 문화는 아메리카에서 흑인문명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통, 역사와 근대성의 과정으로써 흑인, 세련되고, 실존적이고, 동시에 경험적이고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로 정의되었다. 즉, 흑인들이 공동체,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는 문화는 그 사회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창의적인 문화라는 것이다(Torres & Whitten 1998, 4-5). 문화 논쟁은 콜롬비아 흑인들의 정체감을 형성하고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했는데, 특히 흑인 개인에 대한 권리 쟁취를 위한 접근보다는 공동체적 삶에 기초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흑인 문화 운동은 1976년에 후안 데 디오스 모스케라(Juan de Dios Mosquera)가 설립한 소웨토 연구 센터가 주도했다. 이 센터는 1982년에 흑인공동체의 민권 국민운동인 시마론(Cimarrón)운동으로 발전했는데, 정치적으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과 남아공의 반아파트헤이드 운동의 영향을 받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정치권력과 연계된 인종성 형성, 흑인 공동체 형성을 주장했

4) 나타나엘 디아스, 마리노 비베로스,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 델리아 사파타, 엘시아스 마르틴 곤로라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과 지식인들이다.

5) 당시에 형성된 흑인단체들은 아미르 스미스 코르도바가 창설한 흑인문화연구센터(CIDCUN),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가 주도한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연구센터와 콜롬비아 민속연구재단, 산시 모스케로가 창설한 프란츠 파농 연구센터 등 콜롬비아 흑인연구와 운동을 이끌었다(Agudelo2005, 171-172;Wade, 1997, 95).

다. 또한 정부에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구조적인 차별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흑인의 결속력을 이끌어낼 기제가 없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미국과 남아공은 짐크로 법이나 아파트헤이드와 같은 인종 분리 정책이 공식화되어 있어 정치적 동원화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 콜롬비아는 혼종성을 강조하면서 개별 인종들의 정체성이 희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웨이드는 콜롬비아 흑인들이 인종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차별 때문만은 아니며 다름(Alterity)의 구조에 편입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Wade 1997,37). 따라서 초기 흑인 운동은 구체적인 정치 전략을 추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인종·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흑인운동은 문화 정치로 변화되어 문화 공동체로서의 흑인의 개념을 도입했다. 흑인공동체는 흑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태평양 연안 지역에서 구체화되었으며 흑인의 역사적·문화적 공통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1991년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흑인을 정의하는 용어에 대한 개념적 논의가 확대되었다. 특히,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프리카에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 아프로(Afro)라는 접두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Afrocolombiano)과 아프리카계 후손(Afrodescendientes)란 용어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마누엘 사파타 올리베야는 라틴아메리카 흑인들의 통일성을 강조하는 아프리카계 후손이라는 용어보다는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주는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이라는 용어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종적·문화적·역사적 동일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의 역사성을 나타내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흑인

운동은 역사적 특수성에 기초한 문화정치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Agudelo2005, 171).

Ⅲ. 신헌법과 흑인 공동체의 문화권

1. 신헌법의 다문화주의적 특성

흑인들은 식민, 근대 국민 국가 형성, 산업화와 국민연합으로 이어진 과정에서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 시민적 권리는 정치·경제적 환경에 처한 한계적 삶을 인정받는 것이며 문화적 권리는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적 권리는 보호받는 것은 콜롬비아인으로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인종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한계적 삶은 흑인을 계급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경제 권리는 사회 운동을 통해서 일정정도 획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과 사회권은 민주화가 진전되면 한계성은 있겠지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나 문화권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진다. 계급적인 접근의 흑인운동은 1982년에 벨리사리오 베탕쿠르(BelisarioBetancur)가 취임하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 베탕쿠르 대통령은 라비올렌시아에서 시작된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상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민주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자유권도 보장될 수 있지만 문화권이 보장받기 매우 어렵다. 그것은 국민연합이 추구하는 이상도 여전히 국가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0년 가비리아(Gaviria)정부가 들어서면서 특정한 엘리트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엘리트 연합 체제인 보수당과 자유당의 양당 구도에서 벗

어나 새로운 정치구조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혁이 추진되었다. 가비리아 정부는 1991년 7월 부통령제 신설, 지방자체단체장 직선제, 게릴라 전향집단 및 소수 인종대표의 제도권 수용 등을 골자로 헌법개혁을 단행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80-82). 결국 1990년대 들어 콜롬비아 흑인들은 계급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인종으로서의 권리, 즉 문화적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에 진입할 수 있었다.

신헌법은 다민족다문화 국가임을 인정함으로써 계급으로서의 흑인과 인종으로서의 흑인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확장시켰다. 그동안 콜롬비아는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히스패닉, 가톨릭과 스페인어만를 인정했다. 그러므로 국내의 다양한 문화 집단과 공동체들은 국민국가의 통일성과 문화적 단일성을 약화시키거나 훼손시키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논리에 따라 인디오와 흑인 공동체들이 지니고 있는 독자적인 언어 체계와 공동체적인 삶은 콜롬비아인의 문화적 단일성을 모자이크화하는 것이며 동시에 준엄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인디오와 흑인은 헌법이 정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유한 언어, 문화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포기해야 했다. 국민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란 것이 민족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치 체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신헌법은 다인종 사회에서 개별 인종들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적 삶과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2조에서 콜롬비아 국민의 개인적인 가치와 삶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 명예, 재산, 믿음, 자유와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조는 “국가는 어떠한 차별 없이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기

초단위인 가족을 중시 여긴다."고 규정한다. 국민들이 지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되는 법규정은 콜롬비아의 정치·사회적 관계를 좀 더 민주화시켰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콜롬비아 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발전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7조는 "국가가 콜롬비아의 다민족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한다."고 선언한다. 이 짧은 조항이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많은 소수 민족이나 인종들에게 변화를 가져다준다. 지금까지 근대 국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혼혈을 인종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면서 개별 인종들이 지니고 있는 인종적 특성과 문화적 독창성은 철저히 무시하거나 배제되었다. 개헌으로 그 동안 배제되었던 문화 집단들이 사회전면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8조에서는 개인과 국가가 다양성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권의 책임성을 밝히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조는 언어권과 교육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스페인어는 콜롬비아의 공식 언어이다. 소수 민족의 언어와 방언은 그들의 영토에서는 역시 공식 언어이다. 자신의 언어적 전통을 지니고 있는 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중 언어로 한다."

기존 헌법은 스페인어만이 공식 언어이며 스페인어로만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디오와 흑인들이 지니고 있던 언어적 특성들은 사라지거나 스페인어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새로운 헌법이 이중 언어를 인정함으로서 자신들의 역사, 삶과 문화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공식문서도 이중 언어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변화는 교육 과정 변경으로 이어졌다. 사실, 이 조항은 문화공동체

를 이루고 살아오고 있는 안데스 지역의 인디오들의 오랜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디오들은 고유한 문화집단으로서 구별되는 언어체계, 사회제도, 공동체적 삶을 누리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율권과 자치권을 포함하는 영토권을 주장해 왔다.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성, 인종, 국적, 출신,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이나 철학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 자유와 기회를 누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런 법 규정이 곧 콜롬비아 흑인들의 사회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 조항은 유엔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제정한 조항으로 인권조약에 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14조 17항에서는 “헌법이 발효된 이후 2년 내에 의회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태평양과 쿠엔카 강 기슭 농촌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땅에 살고 있는 흑인 공동체에게 토지의 공동소유권을 부여한다.”는 수정안 55조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 흑인 공동체의 구성, 역할과 권리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수정안 55조가 콜롬비아 흑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본법이다. 수정안은 흑인들이 제헌의원 선거 과정에서 지원했던 인디오 출신 의원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흑인들이 인디오와 같은 인종 정체성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절차법이다.

신헌법을 통해 국민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음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해 법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콜롬비아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위법행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

인 흑인의 권리가 보호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정부가 흑인들의 인종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1993년 제70호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흑인법으로 알려졌을 만큼 흑인 공동체의 문화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콜롬비아의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적인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Agudelo2005, 15).

헌법개혁은 보수당과 자유당으로 구성된 정치 엘리트 연합을 해체시키고 다양한 계층의 행위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이고, 개별 인종과 종족 집단의 사회적 기여와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다원주의를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개혁은 특정한 사안에 대한 법률 개정과 달리 전체 게임의 룰을 변화시킨다. 여기에 흑인이 새로운 사회 행위자이며, 문화적 존재로 등장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다원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흑인법의 문화권적 권리

1) 흑인 공동체의 집단적 문화권

1993년에 발표된 흑인법은 흑인들이 오랫동안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함은 물론 문화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흑인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흑인 운동이 늦게 태동되었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넘어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콜롬비아의 정치,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전에 빠져 있는 전체 정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흑인법은 이미 재정된 신헌법이 흑인 공동체를 인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한데서 시작되었다. 제70호 법령인 흑인법은 제1장에서 법의 목적과 정의를 밝히고 있고, 제2장에서는 법의 원칙, 제3장에서는 공동재산권 인정[6], 제4장에서는 토지 이용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 제5장에서는 광물자원, 제6장에서는 인권의 개발과 보호 메카니즘, 제7장에서는 경제 사회 개발 장려 정책, 제8장에서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다. 모든 내용이 흑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지만 여기에서는 흑인 공동체의 개념, 공동재산권,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다.

제1장 1조는 태평양 연안과 강변의 농촌 지역에서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는 흑인공동체의 공동 토지소유권을 인정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인종 집단으로서 흑인 공동체의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주고 콜롬비아 사회의 다른 집단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메카니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Jackson1993,1). 이와 같은 법안의 목적은 흑인들이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법안이 규정하는 흑인공동체가 문화적 권리와 자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영역 구분이 콜롬비아 사회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흑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문화를 지니고 있고, 공동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향유하면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거나 나타내고 있는 흑인의 후손들의 가족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Jackson1993,3). 흑인

6) 공동재산권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메리카 인권 헌장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재산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에서 출발해서 국제노동기구의 169 헌장에 있는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인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콜롬비아는 국제노동기구의 169 헌장에 서명했다(IACHR 2007,13-14)

공동체는 식민시대에 도망노예들이 만든 문화 공동체인 팔렌케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동안 외생적이고 낙후된 것으로 치부되었으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면 보전해야할 문화 유산이다.

흑인법은 모든 문화권역의 종족적·문화적 다양성,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흑인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흑인 공동체가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흑인 공동체와 자연의 관계를 생각하는 환경 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흑인법은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이라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법안을 통해서 공식화되었다.

법안의 토지(El Territorio)는 태평양 연안, 지역의 강변, 불모지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지역에서만 시행되었으나, 다른 지역 흑인공동체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현재 공동재산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제70호 법령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흑인 공동체 지역, 둘째, 카리브 지역의 내륙과 안데스 고원의 계곡에 가족 소유 재산, 셋째, 카리브 지역 섬이나 군도, 해안지역, 넷째, 산바실리오, 산안드레스, 프로비덴시아 팔렌케의 특별 지역, 다섯째 정착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Sánchez& García 2006,26). 여전히 도시지역, 인디오 영토, 국립공원, 국가안보와 방어를 위한 지역, 산림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한 지역에서는 천연자원의 이용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각 공동체는 자신들이 요구한 토지 혹은 지역의 공동재산 관리 행정을 담당할 지역평의회(Consejos Comunitarios)를 구성해야 한다. 지역평의회는 흑인공동체의 토지 관리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으며, 공동재산권의 보호와 보존, 문화 정체성 유지, 천연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감시 기능, 각 공동체의 합법적인 대표 역할, 조정 가능한 내부 갈

등의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Sánchez& García 2006,29;IACHR 2007, 13).또한 지역평의회는 시행령 1745호에 따라 농지개혁 연구소(INCORA)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기술(記述), 공동체의 사회조직, 인구학적인 설명, 토지 소유형태, 토지내의 분쟁, 천연자원 이용, 전통적 생산방식 등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지역평의회가 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방 행정 기관의 하부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가 공동체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공동 소유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차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정된 이후 시효가 없이 운영된다. 그러나 내전, 마약 밀매, 구조화된 차별, 벌채와 팜오일 재배와 같은 대규모 농공산업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소유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2) 영토권 인정을 통한 인권 증진

제70호 법령으로 그 동안 콜롬비아 사회에서 가려져 있던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인종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흑인 문화와 정체성은 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토지는 해당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인법에서 토지 소유권이 문화권을 인정하는 핵심적 내용이 된다. 토지에 관해서는 32조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인디오 공동체에게 인정해 주었던 것과 같은 흑인 공동체의 토지권과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는 자신의 문화 정체성과 생산방식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흑인들이 인정받는 것은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확보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농촌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땅에 대한 물질적, 상징적, 정신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 소유권 주장은 이러한 애착심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토지권은 소유권을 규정하는 기존의 법률과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대신에 그 땅에 대한 소유만을 요구한다. 반면 영토권은 규칙의 수정을 요구하며 단순히 땅이나 토지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정체성과 자치권,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한다. 이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족권(Ethnorights)은 공식적인 신화인 혼혈성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영토권은 국가와 사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국토 내에서 새로운 영토성을 형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영토권이 국가적 분립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국토 내에서 자신들의 언어, 문화와 네트워크를 갖춘 자치적 영토를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로버트삭(RobertSack)이 말한 것처럼 영토성(Territoriality)은 권력에 기초하여 자원과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존재론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Offen2003,45-47).즉, 사람들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곳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처럼 영토권 주장은 기존 지배 체제와 마찰을 빚게 되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인종적 마찰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점이다.

제33조는 "공공장소, 매스미디어, 교육 같은 모든 사회 영역에서 흑인 공동체에 대한 위협, 분리, 차별이나 인종주의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가가 경제적 가능성, 교육, 보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습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 금지가 현상적인 차원에 거치지 않고 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으로 확대되어 흑인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흑인 공동체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경제, 자연, 문화와 사회 유산, 예술적 가치,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종교적인 믿음을 포괄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개인과 집단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특정한 흑인 공동체의 삶에서 추출한 것들이어야 한다. 또한 흑인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기술, 공학과 직업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가 흑인 공동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지고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국가는 국가교육 시스템 내에 흑인 공동체의 문화 현상, 콜롬비아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점 등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감시·감독할 의무도 지닌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개의 트랙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흑인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고, 다른 하나는 사회 통합에 필요한 교육으로 흑인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지니고,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수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흑인 공동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문화적 전통을 전승하여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흑인법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인종차별철폐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법은 특정한 인종 집단에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할당제를 통한 권리 신장을 포함한다. 흑인법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 흑인들을 위해 의회의 2석을 할당하고 있다. 둘째,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집단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셋째, 흑인 커뮤니티가 소유한 땅의 지하자원에 대한 권리도 인정한다. 넷째, 문화 교육의 권리를 인정한다. 흑인들은 독립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데 그 문화의 전

승이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접근도 확대했다. 다섯째, 흑인들은 토지 이용 계획 수립과 자율적인 지역평의회의 집행부 활동과 같은 사회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7] 이와 같이 흑인들이 삶의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이 개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흑인공동체의 침해받는 문화적 인권

1. 행정 절차로 침해받는 영토권

정부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122개의 흑인 영토권을 인정했다. 토지 규모로는 4,500만 헥타르이며, 흑인 공동체 수는 1,250개에 이르고 있고, 전체인구는 270,000명 정도이다. 각 흑인 공동체는 전체 인구가 30명에 불과한 작은 공동체부터 30,000명에 달하는 규모까지 다양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다. 빈약한 자본과 열악한 행정 시스템이었지만 국제기구의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 규모의 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은행은 1994년에 천연자원 관리 프로그램의 325만 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은 열대 우림 지대의 파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으로 인디오와 흑인 단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기구의 자금 지원이 라틴아메리카의 흑인과 인디오 공동체의 영토권을 인정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흑인 공동체의 토지 소유권 주장은 단순히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

7) 이 법은 태평양 연안지역에서 이미 형성된 흑인과 비흑인 거주 지역을 분리하여 흑인들에게 집단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Wade 1997, 99).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화집단으로서의 자치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상황은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정절차 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INCODER가 해당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중앙 정부가 아직 주변부 지역의 소유주 현황, 영농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흑인 공동체가 신청한 지역이 누구의 소유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따로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에는 공동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유휴지로 등록된 경우만 신청인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행정력의 부재가 흑인 공동체의 소유권 이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소유권 신청이 거부된 경우를 살펴보면 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신청 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거나 INCODER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경우였다.

다음으로는 인디오 공동체와 흑인 공동체와의 마찰이 발생하는 지역이 많았다. 인디오와 흑인들이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서로 중첩되는 지역이 많았다. 인디오들은 전통적으로 에히도를 통해서 독립된 문화 공간을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디오들이 정착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유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사실 농촌 지역에서 엄격한 경계구분은 인디오와 흑인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어떻게 경계짓는가에 따라 경제적 삶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로차(Arocha)는 흑인들이 계절에 따라 토지를 다르게 이용하고, 느슨하고 탄력적인 토지 경계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인디오와 흑인의 영토 구분은 마찰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생

활의 터전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의 구분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이중성을 보인다.

INCODER가 중재자로만 역할 할뿐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자체적인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콜롬비아 정부가 ILO 협정 169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흑인법은 ILO 협정 169호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법인데, 이 협정은 독립 국가 내에 공존하고 있는 인디오와 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법이다. 국제노동기구가 1989년에 적용하여 국가, 지역과 국제 수준에서 폭 넓게 적용되고 있다. 협정 시행을 위해 세계은행, UNSA와 UNDP 등과 함께 인디오에 대한 법률과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콜롬비아는 1991년에 이 협정에 서명하고 신헌법에 이 조항을 명문화했다. ILO 협정 169호는 정부가 전통적으로 인디오들이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와 행정적 자치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집단적 문화권은 라틴아메리카 헌법 개정에 인디오의 언어권, 흑인의 토지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생물다양성 협약도 이 협정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라틴아메리카 17개 국가 중에 12개국이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종족 공동체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이 민족 문화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조상들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고 있는 인디오 혹은 부족집단이다. 국제법은 이런 문화집단이 자신의 영토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빠르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흑인 공동체의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와 지역과 관련이 있다. 흑인법은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흑인 공동체로 문화권 인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역을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제한시켰다. 산업화되면서 많은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 공동

체를 벗어나 도시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흑인들의 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흑인 공동체들의 소유권 인정 대상 범위를 도시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많은 흑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카리브 지역의 중요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카리브 지역은 흑인들이 최초로 유입된 곳으로 도망 노예들이 건설한 팔렌케가 많은 곳이다. 이런 관점에서 흑인 공동체가 문화적 독창성과 차이성에 기초하고 있다면 당연히 카리브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흑인들은 안데스 산면과 태평양 연안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농촌과 도시, 평야와 산악지대, 해안과 내륙 등 전 국토에 걸쳐 자신들의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흑인이 문화공동체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집단적 공동생활과 문화적 독자성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는 문화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2. 내전과 강제 이주로 침해받는 생존권

콜롬비아는 라비올렌시아 이후 내전 중에 있으며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지역이 주요 전장이다. 이 때문에 흑인 공동체의 토지 소유권 획득은 내전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흑인들은 내전으로 인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 1996년 이후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게릴라, 민병대와 정부군들이 납치, 요인 암살, 대량 학살과 인종 말살, 위법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흑인의 인권 침해 사례는 많지만 여기서는 흑인 인권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권지도자들의 피해, 강제이주와 피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게릴라와 민병대(AUC)가 공격하는 주요 인사에 흑인 운동지도자, 인권

운동가, 지역평의회 지도자들이 포함되면서 흑인 공동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를 잃어가고 있다. 주요 인물의 생존권 침해와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위협하는 집단 학살도 발생하고 있다. 반군 활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식적, 비공식적 반체제 인사들-인권 수호가, 변호사, 판사, 농민 운동가, 노동 운동가, 교사, 학생- 또한 희생되었다. 반군들은 이들을 친정부 세력으로 의심하여 표적으로 삼았으며, 1999년에만 약 600여 명을 인질로 삼고 몸값을 받아냄으로써 반군 활동 자금을 마련하였다(Pinzon2000).유엔은 콜롬비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을 보호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결과로 2005년에만 약 41명의 인권보호자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Cepeda2008).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 옹호자들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있는 제3세력으로서 콜롬비아인들의 인권 증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2000). 그렇기 때문에 인권 관련 활동가들의 희생은 흑인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국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를 막는 최소한의 방어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전은 2002년 정부와 FARC간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진정국면을 맞았으나 협상이 실패로 끝나면서 격화되었다. 협상 실패는 직접적으로 흑인과 인디오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북서부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흑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에콰도르, 파나마와 코스타리카로 피난했다(Murillo-Urrutia2007,140).이때 초코 지방의 아르키아 강 주변에서는 약 450 가족의 2,500명 이상이 피난을 떠나면서 그 곳이 공동화되었다. 남부지역에서는 약 400명이 폭력을 피해 피치마로 이주했다(UNHCR 2006).이런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이동의 자유권과 안전추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은 콜롬비아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이주와 피난민 문제가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피난민의 규모가 전체 인구의 약 8%에 이르는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 33%가 흑인인데 이들은 도시와 오지로 피난을 떠났다. 안데스와 아마존 오지로 이동하는 경우는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안데스 오지에서는 게릴라 단체의 주수입원이 되는 마약을 재배하면서 게릴라의 침입을 자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문화 보존을 위협하는 군사 활동이나 마약 밀매업자, 방목업자, 벌목업자들에게 자신들의 토지를 강탈당하고 있다. 한편,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흑인들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서 농촌지역의 하층이 다시 도시지역의 최하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리브 해안지역으로부터 피난 온 흑인들이 카르타헤나의 변두리인 넬슨 만델라 구(NelsonMandela)와 같은 도시 빈민가에 주로 정착했다. 도시 이주자들은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같은 지역 출신들이 모여 살고 있다. 도시의 특정한 지역에 공동의 문화를 즐기고 있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 흑인 운동가들은 영토권 인정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이주와 피난은 흑인들이 형성한 고유한 문화 양식들을 파괴한다. 흑인들은 독특한 문화양식과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이주와 피난으로 기존의 흑인 문화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소멸되었고, 새로운 지역에 정착한 흑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일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콜롬비아가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현상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들은 도시지역에서 출신지

역에 따라 사회·문화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원형을 잃어버렸다. 이들이 부딪히는 문제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농촌의 흑인들은 개인이 아닌 집단 혹은 공동체로서 차별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도시의 흑인들은 개인적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구조화된 차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강제이주와 피난은 흑인들에게 주류 사회와의 동질화를 강요하는 것이며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자본주의 모델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내전은 콜롬비아인들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에서도 그 영향으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내전은 흑인들이 유지하고 있던 공동체의 해체, 삶의 터전 상실과 같은 생활을 파괴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3. 인종차별로침해받는사회권

대부분의 흑인들은 사회-인종적 배제의 희생양이며 극도의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 흑인 발전 계획에 따르면 보건, 교육 지표뿐만 아니라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콜롬비아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가 흑인이고 흑인 중에 약 82%가 하루 3달러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흑인들의 평균 GDP가 콜롬비아 평균인 1,500달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00달러 정도이다. 흑인 노동자 중에 74%는 법정 최저 임금 이하를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가정 중 19%만이 전기, 식수와 위생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국내 평균 62%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다. 보건 부분에서는 영유아 사망률이 1,000명 당 92명에 이른다. 콜롬비아 전체 평균이 20명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높은 수치이다. 콜롬비아 가족복지연구소와 안티오키아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평양 연안 지

역의 경우 5세 이하 어린이의 33.7%,13-49세 여성의 33.5%가 빈혈이었다. 지난 2007년 1월에서 3월까지 5세 이하 어린이 37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Murillo-Urruti2007, 139).

이런 불평등한 상황은 구조적인 차별에서 기인하는데 콜롬비아에서 직장을 구할 때 사회-인종적인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Perry2004). 흑인들 중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요 직책을 차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백인과 흑인의 임금 격차도 크다. 백인과 흑인이 동일한 기술 숙련도로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도 백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심지어 흑인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에 응시했을 때도 인종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흑인들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업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태도가 사회-인종적 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된다.

2004년 바예대학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들은 칼리, 카르타헤나와 메데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도시들은 농촌지역의 많은 흑인들의 이주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FlórezandMedina2001).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이유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다수가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칼리에서는 5-11세, 12-17세, 18-25세 연령대의 취학률이 76.1%,18.5%,3.2%인데 흑인의 경우에는 71.9%,15%,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ánchez& García 2006, 21).

표 2> 흑인의 개인적·공동체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건

구분	도시지역	농촌지역
기본적인 조건	고용, 주택, 보건, 교육	토지, 보건, 교육, 상품의 시장 접근
사회·문화적 조건	이웃과의 평화로운 생활과 협력 동향들간의 만남의 공간 피에스타-룸바	공동체적 정체성 인식 장례식, 전통축제, 관습의 지속, 가족 협력
심리적인 조건	동료를 사귀는 것 개인적인 장점을 인정받는 것 주거와 노동의 차별 철폐	가족 관계

자료: Sánchez, Enrique & García, Paola(2006), Más Allá de Los Promedios: Afrodescendientes en América Latina: Los Afrocolombianos, Washington, The World Bank, p.32)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콜롬비아 흑인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8] 도시지역에서는 인종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것이 곧 생활의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반면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달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의 안전과 같은 요소들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흑인들이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대한 인식적인 차이는 지니고 있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생존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사회적·인종적 차별인 사회권 영역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8) 콜롬비아는 자연환경과 따라 카리브 연안, 안데스 고원, 오리노코, 아마존과 태평양 연안으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5개 지역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환경에서 살아온 흑인들도 지역의 전통을 담고 있어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과 도시지역의 흑인공동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평온, 노동, 주거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 토지소유, 무장분쟁의 종결, 식량 확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흑인의 삶이 차별적이지만 혼혈적인 인종 정체성 형성, 내전 상황, 인종에 대한 계급화된 시각의 접근과 이해 등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흑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흑인들이 처한 정치·경제적 상황이 계급적인 접근으로만 설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종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흑인들의 자의식 함양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인지 정도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Ⅴ. 맺음말

흑인들은 콜롬비아의 발전에 여러 측면을 통해 이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 존재론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흑인이 노동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국민 국가로 발전 과정에서 혼혈성이라는 '근대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존재적 가치는 무시되거나 드러나지 않았다. 정치적 민주화와 문화적 다원주의가 성장하면서 흑인이 재평가되었고 이 과정에서 흑인은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늦었지만 '새롭게' 콜롬비아 사회에 나타났다. 이는 저항적 정체성에서 자율적 정체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헌법과 흑인법은 자율적 정체성의 정치화를 이끌었다. 신

헌법은 그 동안 콜롬비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흑인들에게 자유권과 사회권을 보장해주었다. 그리고 흑인법은 사회적 소수자인 흑인에게 문화권을 보장해줌으로써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법이 제공하는 영토권은 흑인들에게 여전히 낯선 제도로 남아있다. 그것은 흑인들의 영토권이 인디오의 영토권 개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종족성을 형성하면서 발생한 '어색함'에서 비롯되었다. 어색한 영토권이 콜롬비아 흑인들의 문화권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한다.

또한 콜롬비아 사회를 옥죄고 있는 내전은 흑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그 수준은 일상화의 단계에 진입했다. 이것이 내전이 주는 가장 큰 위협적인 요소일 것이다. 내전은 직접적인 피해와 함께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일상적 위협, 강제이주와 피난과 같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인 피해만큼이나 큰 영향을 미친다. 마치 식민초기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 당한 것과 같은 파괴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은 심화된다. 이미 인종차별이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인종차별은 교육, 노동현장, 보건과 취업 등 사회 활동 전반에서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란 법적·제도적 실체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헌법과 흑인법을 통해 흑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피력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6), 콜롬비아 편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리카르도 핀존(RicardoPinzon)초청간담회, 콜롬비아 내전과 평화운동: 군폭력과 인권유린 , 2001년 3월 19일, 성공회대.

박병섭(2008), 다문화주의 철학 , 실크로드.

차경미(2008),「카리브해 빨렝케데산바실리오 흑인공동체의 저항으로서의 역사, 기억으로서의 문화」,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1, No.2, pp.103-128.

Agudelo, Carlos(2005) Retosdel Multiculturalismo en Colombia: Políticay PoblacionesNegras, Medellín: La CarretaEditoresE.U.

Amnesty International(2000), "Colombia:Protec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One Step Forward,Three Steps Back", Amesty International.

Arocha,Jaime(1998),"Inclusionof Afro-Colombia: UnreachableNational Goal?", Latin American Perspectives,Vol.25,No.3, pp.70-89.

Barbary,Olivier & Urrea,Fernando(2003)"La poblaciónnegra en la Colombia de Hoy: dinámicas sociodemográficas,Culturales y Políticas", Estudo Afro-Asiáticos, No.1, pp.9-21.

Camacho, RobertoPineda(1997), "La Constitución de 1991 y la perspectiva del multiculturalismo en Colombia", ALTERIDADES, 7(14): pp.107-129.

Cepeda, Iván, "Human Rights Defendersin Colombia," (http://www.humanrightsfirst.org/defenders/hrd_colombia/hrd_colombia.asp 2008/4/25)

Cordoba, Libardo& Obregon, Diego Luis(192),El Negro en Colombia: en

Busca de la Visibilidad Perdida, Cali: Universidad de Valle.

Curin, Elosabeth (2003), "El negro, de una invisibilidad a otra: permanencia de un racismo que no quiere decir su nombre", Palobra, No.5, pp.1-12.

Flórez, Carmen Elisa and Medina, Carlos (2001), "Understanding the Cost of Social Exclusion Due to Race or Ethnic Background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Countries," Cali: Colombia.

Inter-American Commision on Human Rights (IACHR) (2007), Unfulfilled Promises and Persistent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Afro-Colombians, Rapoport Center.

_____ (1999), Third Report on the Situations of Human Rights in Colombia, (http://www.cidh.oas.org/countryrep/Colom99en/table%20of%20contents.htm, 2007/5/23)

Jackson, Norma Lozano, Law 70 of Colombia (1993): In Recognition of the Right of Black Colombians to Collectively Own and Occupy their Ancestral Lands, (http://www.benedict.edu/exec_admin/intnl_programs/other_files/bc-intnl_programs-law_70_of_colombia-english.pdf 2007/6/11)

Jiménez, Leonardo Reales, "Racismo y Políticas Públicas en Colombia. El caso afrocolombiano (1991-2005)," (http://www.portail-eip.org/SNC/EIPColombia/2005/afro_colombiens/Racismo.pdf, 2007/05/15)

Mosquera, Claudia; Pardo, Mauricio & Hoffmann, Odile (2002),

Afrodescendientes en las Américas: Trayectorias Sociales e Identitarias 150 años de la abolición de la esclavitud en Colombia, Bogotá: Universidad Nacional de Colombia.

Murillo-Urrutia, Luis Gilberto(2007), "Contemporary Challenges in Colombia: An Afro-Colombian Perspective", The Journal of Pan African Studes, vol.1, no.8, pp.135-142.

Nobres, Melisa(2005), "The Myth of Latin American Multiracialism", Daedalus Winter 2005, pp.82-87.

Offen, Karl H.(2003), "The Territorial Turn: Making Black Territories in Pacific Colombia", Journal of Latin America Geography Vol.2, No.1, pp.43-73.

Pardo, Maurido(2001), Acción Colectiva, Estado y Etnicidade en el Pacífico Colombiano, Bogotá: Instituto Colombiano de Antropología e Historia.

Peoples Global Action(2002), Mision de Obervacion a la Situación de las Comunidades Afrodescendentes en Colombia: Desplamiento Forzado Interno, Violaciones Al Derecho Internacional Humanitario y Situación de Personas Afrocolombianas en las Carceles, Bogotá (http://www.nadir.org/nadir/initiativ/agp/free/colombia/txt/2002/afrocolombiatitel.htm, 2007/5/28)

Perry, G(2004), Inequality in Latin America & the Caribbean: Breaking with History?, World Bank Group.

Peter, Wade(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London: Pluto Press.

Restrepo, Eduardo(2004), "Ethnicization of Blackness in Colombia", Cultural Studies, Vol.18, Issue 5, pp.698-715.

Sánchez, Enrique & García, Paola(2006), Más Allá de Los Promedios: Afrodescendinets en América Latina: Los Afrocolombianos, Washington: The World Bank.

Torres, Arlene & Whitten, Norman E. Jr(1998), Blacknes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ocial Dynamics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UNHCR(2006), "Colombia: Afro-Colombian and Indigenous communities at risk", (http://www.unhcr.org/news/NEWS/454b20e02.html, 2007/5/23)

, "Convention (No.169) concerning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in Independent Countries," (http://www.unhchr.ch/html/menu3/b/62.htm, 2008/5/1)

▌논문투고일자 2008년 5월 9일
▌심사완료일자 2008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10일